



## “화평법 협의체” 출범, 소통과 협업으로 하위법령 마련

### 산업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논의의 틀로 활용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천받은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슴기 사고, 연이은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 부담완화 요구가 동시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로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산업계는 EU REACH 등록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그리고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생활 화학제품 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민간단체에는 환경보전 및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고, 화학물질 위해성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도 참여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규제대상인 산업계와 일반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화평법 협의체는 9월 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격주로 운영되며 금년말까지 하위법령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도출된 쟁점에 대해 근거 자료를 토대로 자유토론이 이루어지며, 논의결과에 대하여는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에 반영된다.

#### 화평법 · 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구성 · 운영계획

##### 1. 추진목적

관계부처,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의 틀” 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쟁점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안 도출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계와 민간단체를 동시에 배려하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법령에 대한 순응도 및 이행력 제고

##### 2. 구성 · 운영계획

###### 가. 구성체계

(기본방향)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계-정부가 소통채널로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라는 큰 틀에서 운영

종합대책 이행분과와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되, 주요 이해관계인(산업계 관리자, 전문가 등)이 상이하므로



### 법률별 분과 별도 운영

각 법률 협의체에 산업계와 非산업계가 유사한 규모로 참여토록 하고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총 30명 이내로 구성

하위법령(안) 법리 검토, 체계·자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률전문가 그룹” 별도 구성

(화평법 분과) 산업계 실무자, 민간단체,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

〈산업계〉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자단체와 함께 EU REACH 등록경험이 있는 업체 실무자 중심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독성·제품 전문가, 컨설턴트 등

(화관법 분과) 경총 등 대표단체와 업체담당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

〈산업계〉 경제 5단체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을 참여 시키되, 주요 사업장별 실무담당자들로 구성

〈민간전문가〉 사업장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관련 전문가 등

### 나. 운영계획

(기간) 2013.9월부터 하위법령 최종안 도출시(12월)까지 운영

(회의) 매주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분과별 격주 회의 개최

(형식) 하위법령(안) 내용 중 주요 쟁점 선정 및 자유토론

논의결과에 대하여 별도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 반영

〈법률별 주요 쟁점(안)〉

회차	화평법	화관법
1	· 보고·등록범위 (소량면제, R&D용 등)	·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2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제출자료, 정보제공 등)	· 화학사고 범위 및 즉시신고 기준
3	· 등록신청자료 수준 (시험항목 중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4	·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지정	· 취급시설기준
5	· 화학제품신고 및 안전관리방안	· 취급시설 설치·배치 기준
6	·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체계	·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7	· 유해화학물질 지정기준	· 위해관리계획 도입 방안
8	· 녹색화학센터 지정,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 안전진단 빈도, 도급신고 및 수급인 자격요건, 운전자 교육 내용 등

##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가칭)

